#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84

발의연월일: 2022. 4. 11.

발 의 자:김민철·오영환·최기상

김철민 · 임호선 · 양기대

이형석 · 윤준병 · 이용빈

김교흥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에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먼지나 매연을 발생시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차량의 이동 범위와 이동량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여 학교주변에 물류창고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새로운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본문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의"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시설이"를 "시설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이"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규모, 용도 및 학생의 학습, 안전 등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 각 호의"를 "제9조의"로,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를 "시설(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시설에"를 "시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물류창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에 이미 설치된 물류창고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 ⑦ (생 략)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	8 <u>nl</u>
<u>육환경보호구역 내</u> 금지행위	<u>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의</u>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	
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	
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i
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	③
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u>교</u>	<u></u>
<u>육환경보호구역</u> 을 설정·고시하	육환경보호구역 및 제9조제2항
여야 한다.	에 따른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u>구역</u>
④ <u>제1항</u> 에 따라 설정·고시된	④ <u>제3항</u>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1. ~ 3. (생략)
- ⑤ (생략)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저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지적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지금지행위 등) (생략)

<신 설>

	_
	-
5)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
①제9조제1항	_
	_
<u>시설 및 같은 조 제2항</u> 어	]
해당하는 시설이	-
	-
	-
	-
	-
	-
	-
② (현행과 같음)	1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현행 제목 외	1
의 부분과 같음) ②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	_
선거리 5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에서 「물류시설의 개빌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 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 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규 모, 용도 및 학생의 학습, 안전 등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 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 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야 한다. 의-----시설(제9조제1항 단 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단서에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 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u>제9조</u> 각 호의 행위 및 <u>시설에</u>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
<u>제1항</u> 시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에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①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u>.</u>
② (현행과 같음)